

제274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0년 9월 16일  
전문위원 정 우 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85
- 나. 제 출 자: 송순효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2020년 9월 3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 2. 개정이유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우선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헌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제3조의 제목 “헌혈의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고 헌혈

참여시책 개발 및 헌혈권장활동 적극 협조항목을 추가하여 구청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명시함

나. 헌혈 권장사업계획의 내용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에 제3호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제4호로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헌혈에 참여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가 사용 권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다. 그 밖에 법령명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바로잡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혈액관리법」 제4조, 제6조제3항

2)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조부서: 의약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0. 9. 4. ~ 9. 8.)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우선적인 헌혈참여를 통하여 구민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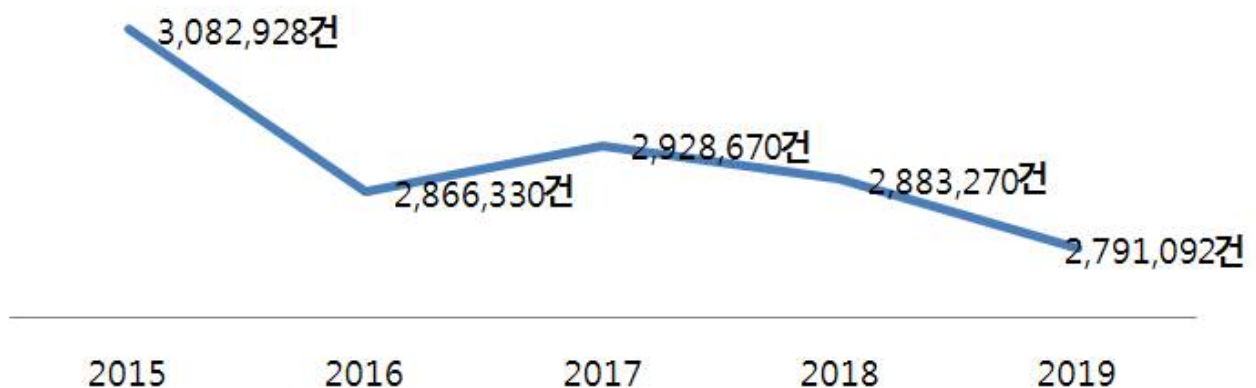
###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헌혈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강서구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를 기존의 헌혈의 권장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고 헌혈참여 시책개발 및 헌혈권장활동 적극협조를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2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가활용을 장려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조례에 쓰인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우리말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혈실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헌혈 참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헌혈참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헌혈참여가 저조<sup>1)</sup>한 실정임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헌혈 우선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헌혈참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헌혈실적(전국)



※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1) 혈액보유량이 가장 적었던 2020년 5월 기준 보유량 2.7일분(적정혈액보유량 5일분)으로 혈액수급 위기 단계 '주의'단계로 격상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0. 05. 13. 보도자료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혈액관리법시행령」

-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